

## 여성주의적 도시권을 위한 시론 차이의 권리에서 연대의 권리로

A Feminist Reconstruct of the Concept of 'the Right to the City':  
From the right to difference to the right to solidarity

이현재\*

르페브르는 '작품에 대한 권리', '도시 전유권', '참여권' 외에도 '중심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 '차이의 권리' 등을 주장함으로써 도시를 '차이의 공간'으로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젠더의 관점에서 '차이의 권리'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필자는 여성의 '차이의 권리'에서 출발하여 르페브르의 도시권을 재구성하고자 했던 서울시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이 프로젝트가 도시를 기존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차이의 공간'으로 생산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여성들이 도시를 '차이의 공간'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성들' 간의 차이와 '여성되기'의 창발적 변형 가능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연대할 권리를 함께 주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주요어: 도시권, 차이의 권리, 여성되기, 연대의 권리, 차이의 공간

### 1. 들어가는 말

역사적으로 도시는 타자들에게 개방된 차이의 공간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가능성과 자유를 찾아 도시로 모여들었다. 좀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실

\*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HK교수(단독저자, [feminphilo@hanmail.net](mailto:feminphilo@hanmail.net))

협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사람들은 도시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차이의 공간으로서의 도시 안에서 여성들은 자유로운가? 여성들의 차이는 도시공간에서 실현되는가? 여성들은 도시 공간에서 소속감과 행복을 느끼는가? 도시를 여성들의 차이가 실현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던 기획과 정책들은 성공적인가? 도시를 여성들의 차이가 배제되지 않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규범적 담론이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 필자는 르페브르의 ‘도시권(right to the city)’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무엇보다도 우선 도시 거주자들이 도시에 대한 권리들, 특히 ‘차이의 권리’를 요구하는 사회적 실천을 수행함으로써 도시를 ‘차이의 공간’으로 생산해야 한다는 르페브르의 주장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필자는 여성의 차이의 권리에서 출발하여 르페브르의 도시권을 재구성하고자 했던 서울시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가 과연 도시를 기존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차이의 공간’으로 생산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여성들이 도시를 ‘차이의 공간’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문자 ‘여성(Woman)’을 전제로 하여 여성의 차이의 권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 간의 차이와 ‘여성되기’의 창발적 변형 가능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연대할 권리를 함께 주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 2. 차이의 공간으로서의 도시

역사적으로 볼 때 도시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이방인들에게 개방된 차이의 공간이었다. 루이스 면포드에 의하면 역사 속에서 최초의 도시는 종교적 의식을 향유하기 위해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였다. 즉 최초의 도시는 상징적인 환상과 예술을 마음껏 향유하기 위해 각

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되돌아오는 만남의 장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멤포드, 1990: 5). “도시는 (...) 용기(容器)라기보다는 자석(磁石)이었고, 거래 및 그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상호교류의 정신적 자극을 구하는 주변사람들을 끌어들이는”(멤포드, 1990: 7) 매혹의 장소였다.

멤포드에 의하면 물론 이러한 자석으로서의 도시는 이방인들을 조직하고 그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점차 용기로서의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즉 고대, 중세 도시의 지도자들은 종교를 강화하고 외부 지역을 공격, 방어하기 위해 세속적 부와 권력을 중앙에 결집시켰으며, 이와 함께 고도로 조직화된 도시통제 시스템을 발전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멤포드는 고대도시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도시에 “상이한 인종, 상이한 문화, 상이한 기술적 전통, 상이한 언어가 물려들어 뒤섞여졌다”(멤포드, 1990: 113)는 점을 강조한다. 출생이나 결혼에 의한 집단구성원만을 인정하는 촌락과 달리 도시는 처음부터 이방인이나 외부인들에게 개방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도시는 이방인들에게 가장 폭넓은 자유와 다양성 그리고 최대한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면서도 철저한 강제와 지배체제를 강요하게 되는 아이러니의 장소가 된다.

현대 도시에서도 개방과 체제 강화의 아이러니는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데이비드 하비(D. Harvey)는 마르크스주의적인 입장에서 현대 도시를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집적지로 설명한다. 도시는 이제 지역이나 일국의 차원이 아니라 지구적 스케일에서 진행되는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시키고 있는 핵심적인 위치가 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도시는 가속화된 자본축적의 생산지 혹은 사회적 잉여가치의 보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는 자본주의를 생존시키고 재생산하는 핵심적인 ‘공간적 돌파구(spatial fix)’이다. 그러나 도시는 이러한 강화의 기체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도시는 바로 지구화로 인해 그리고 지구화와 함께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주해온 이주민들이 만나는 장소가 되었으며 다양한 스케일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정치적 다양성들이 중첩

되고 교차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피터 스미스에 따르면 하비는 현대 도시민 혹은 도시문화가 단순히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침식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지 못하였다. 즉 하비는 도시의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창출되는 상황의 유연성을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새로운 유형의 사회변화나 도시변형을 이끄는 정치적 과정들에 주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피터 스미스, 2010: 53). 뿐만 아니라 하비는 현대도시가 노동을 위해 혹은 결혼을 위해 이주한 이주민들의 다양성이 상호 교류되고 혼종되는 장소라는 점에 충분히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하비는 “이주자 지역에서 표출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공간적 실천들을 놀랍게도 ‘국제주의의 잡탕’”(피터 스미스, 2010: 61) 정도로 폄하하게 된다.

이 글에서 필자는 피터 스미스와 함께 현대 도시가 전 지구적 자본의 논리가 강화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다층적인 스케일의 문화와 정치의 측면들이 상호 교차되는 개방성과 차이의 지점이기도 하다는 데서 시작하고자 한다. 우선 현대도시의 이주민들의 다양한 문화가 접합되는 차이의 공간이다. 문화적 차이는 의심의 여지없이 도시 공간의 특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롤랑 바르트는 도시를 ‘타자와 만나는 장소’(Roland Barthes, 1981)로 묘사하였고 리처드 세넷은 도시 거주자를 항상 ‘타자성의 현존에 있는 사람’(Richard Sennet, 1990)이라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도시 거주자들은 다양한 스케일에서 자신과 타자의 다양한 문화들을 혼합하는 가운데 “문화들을 저글링(to juggle cultures)”(Gloria Anzaldúa, 1987: 79)<sup>1)</sup>하는

1) 필자가 여기서 디아스포라 이론이나 탈식민주의에서 자주 사용하는 ‘혼종’이나 ‘협상(negotiation)’이라는 개념 대신에 유색인 여성주의자들이 자주 언급하고 있는 ‘저글링(juggling)’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각지에서 모여든 도시 거주자들이 자신과 타자의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들을 각각의 상황에서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차이의 상호교차를 실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의 창발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주여성들은 공을 던졌다가 다시 받는 저글러(juggler)처럼 시시각각 변화하는 다양한 스케일의 상황에 맞추어 자신이 갖고 있는 정체성들을 선택하여 꺼내 쓰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며 그것들을 타자의 정체성과 관련시키는 가운데 반주하고 변형

“저글링 기술(juggling skills)”(Jodi Dean, 1996: 36)을 발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대 도시 공간은 정치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 시민운동 등의 거점이 되기도 한다. 즉 현대 도시 공간은 소집단, 지역, 국가, 지구적 규모의 다층적 스케일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들이 상호 교차되는 시민사회를 형성시킨다. 이렇게 볼 때 현대 도시는 단순히 기술적 집약이나 지구적 자본의 돌파구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양한 정체성이 혼합되고 상호 교차되기도 하는 공간이다. 즉 도시는 지구적 자본주의의 논리강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는 지점이기도 하며 나아가 다양한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차원의 정체성들이 실험되고 교환되는 가운데 창발적 차이가 생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 3. 르페브르의 도시권에 나타난 차이의 권리 비판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역시 도시를 체계적 강화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창발될 수 있는 개방적 공간으로 보고 있다. 그는 『도시에 대한 저술들(Writings on Cities)』에서 도시의 사회적 요구는 “안전성과 개방성의 요구, 확실성과 모험의 요구, 작품과 유희 조직의 요구, 예측적인 것과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한 요구, 유사성과 차이의 요구, 고립과 만남의 요구, 교환과 투자의 요구, 의존과 의사소통의 요구,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번영에 대한 요구를 포함한다”(Lefebvre, 1996: 147)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의 영어 번역자이자 편집자인 코프만과 레바스(Eleonore Kofman and Elisabeth Lebas) 역시 이 책의 서론에서 르페브르가 도시를 단순히 자본의 논리에 의해 침식되는 공간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필자의 줄고 이현재, 「여성의 이주, 다층적 스케일의 장소열기 그리고 정체성 저글링」, 한국여성문화학회, 《여성문학연구》, 제22호(2009)를 참고하시오.

“만남, 차이의 앙상블, 교환가치에 비해 사용의 우위권을 갖는 장소”(Eleonore Kofman and Elisabeth Lebas, in Lefebvre, 1996: 18)가 될 수 있는 지점으로 보았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자본의 논리에 의한 전 지구적 통제가 강화되는 상태에서 도시는 어떻게 개방성, 모험, 유희, 예측불가능성, 차이, 만남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될 수 있는가? 르페브르에 따르면 도시는 “즉각성과 만남의 장소, 교환가치나, 상품 혹은 이윤을 통하지 않는 교환의 장소”(Lefebvre, 1996: 147)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소성은 어떤 사회적 실천에 의해 창출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사회적 실천을 이끄는 규범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필자는 르페브르의 사회적 실천 방법론을 담고 있는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 이하 도시권)’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르페브르는 시민권이 아니라 도시권을 통해 개방적 도시의 새로운 가능성이 창출될 수 있다고 본다. 시민권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inhabitant)은 ‘도시에 대한 권리’를 요구함으로써 도시를 새로운 차이가 창출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르페브르가 말하는 도시권이란 무엇인가? 그는 핵심적인 도시권으로 “작품, 참여 그리고 전유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oeuvre, to participation and appropriation)”(Lefebvre, 1996: 174)를 언급한다.

르페브르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작품에 대한 권리’이다. 그는 철학과 예술적 상상력에 의해 도시를 ‘작품(oeuvre)’으로 만들 권리를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도시를 단순한 개념이나 이론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상상과 철학을 통해 작품으로 생산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예술이나 철학은 좁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지 않다. 그가 말하는 ‘작품에 대한 권리’는 도시를 기존의 이데올로기들에 저항하는 사회적 실천을 수행하는 장소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작품에 대한 권리’ 주장이 어떤 공간을 생산해 내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제시하고 있는 공간이론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르페브르는 자신의 저서 『공간의 생산(The production of space)』에서 세 가지 공간개념을 구분한다. 그에 의하면 ‘지각 공간(perceived space)’이란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으로써 대중들은 일상적 환경 속에서 이 공간에 대한 상식적 감각을 반복한다. 이와 달리 ‘인지 공간(conceived space)’은 공간에 대한 지식인들의 정신적 구성물 혹은 공간 표상 등을 말한다. 이 공간에서 지식인들은 다양한 기호와 전문용어들을 사용하여 공간을 해독하고 공간 생산에 개입하며 이를 통해 기존의 사회적 관계와 질서를 합리화한다. 르페브르에 따르면 ‘지각 공간’과 ‘인지 공간’에서 창발적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르페브르는 이러한 공간과는 다른 ‘체험 공간(lived space)’의 개념을 제시한다.

체험공간은 위의 양자를 조합하는 복합적인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주체의 실질적 공간 체험을 표현하는 말이다. 체험공간 안에서 주체들은 권력과 폭력의 상징 등을 수동적으로 체험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기존의 규범을 벗어나 공간의 표상들에 자발적으로 저항하는 체험을 하기도 한다(Lefebvre, 1991: 39). 이러한 저항의 체험은 체험공간이 끊임없이 동요하는 표상공간이며 예술과 문학의 창조적 상상력으로 접근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체험공간은 대중들의 지각공간과 전문가들의 인지 공간을 넘어 양자 간의 균형설정력을 갖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저항과 전복을 통해서 일상의 소외를 극복하는 능동적 주체의 공간이며 차이가 실현되는 공간, 그 결과 전인적 삶이 실현 가능한 공간이다(장세룡, 2006: 307~308).

르페브르가 예술과 문학의 창조적 상상력으로 생산되었던 체험의 공간의 예로 제시한 것은 지배적인 사회적 공간화의 규범과 준거의 밖에 공간적 현존과 실천을 형성하는 무단거주자, 불법외국인, 영세농민, 제3세계 빈민 등의 영역활동이다. 이들의 체험 공간에서 도시는 작품으로 탄생한다. 그는 1968년 5월 혁명도 이와 같은 공간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르페브르에 의하면 5월 혁명에서 학생들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지 않았다. 이들은 예술적 상상력을 통하여 공간을 변

화시키고 전유하는 문화혁명의 공간을 지향했다. 르페브르는 이들의 공간실천에서 억압되고 통제되었던 욕구가 분출되고, 노동 및 놀이의 즐거움이 향연으로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고 여기에 놓인 혁명적 잠재력에 주목한다. 규범적 사회질서를 사유제적으로 전복하는 이들의 모험적 ‘반-공간’은 잠재적 반란공간의 동력이며 ‘모순 공간’의 억압체계를 폭발시키는 ‘차이의 공간(differential space)’을 표현한다(장세룡, 2006: 310).

여기서 필자는 르페브르의 작품에 대한 권리요구가 결국 ‘차이의 공간’의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나는 이 새로운 공간을 ‘차이의 공간’이라고 명명할 것이다. 왜냐하면 추상적 공간이 동질화와 기존의 차이들의 배제를 지향하는 반면, 새로운 공간은 차이를 강조하지 않는 한 탄생(생산)될 수 없기 때문이다”(Lefebvre, 1991: 52).

여기서 ‘차이의 공간’은 자본의 추상적 논리나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모든 것이 동질화되는 추상적 공간과는 ‘다른’ 공간이며 다양한 문화적, 정치적 차이들이 배제되지 않는 공간이다. 르페브르가 경제적으로 다른 생산방식 이외에도 문화적, 정치적으로도 다른 정체성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의 문구에서도 확인된다.

“차이의 공간을 지향하는, 다른 (사회적) 삶과 다른 생산방식의 공간을 지향하는 방식을 추구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과학과 유토피아, 현실과 이상, 지각된 것과 체험된 것 사이의 틈새에 두 다리를 걸치고 있다”(Lefebvre, 1991: 60).

르페브르의 도시권이 이러한 ‘차이의 공간’의 생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은 ‘작품에 대한 권리’ 이외에도 핵심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다른 두 가지의 권리를 살펴볼 때에도 분명해진다. 르페브르는 ‘작품에 대



한 권리' 외에도 도시민들이 '도시 전유권(the right to appropriation)'과 '도시 참여권(the right to participation)'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시 전유권이란 거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도시의 전 공간을 완전하고 충분히 사용하는 것(full and complete usage)을 말한다(Lefebvre, 1996: 179). 이것은 공간을 소유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기존의 이데올로기와는 '다른' 실천방식을 함의한다. 즉 전유권을 주장함으로써 거주자들은 도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차이의 공간'으로 생산해 낸다. 도시 참여권 역시 '차이의 공간'을 생산한다. 참여권의 주장과 함께 모든 도시 거주자들은 국가든, 자본이든 그 어떤 기관이든 이들이 만들어 내는 도시공간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창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르페브르는 이러한 권리들을 통해 도시를 새로운 작품으로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그러나 도시민들이 도시를 충분히 전유하고 도시공간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이를 작품으로 만들 권리를 갖는다는 것만으로 지배적 규범 밖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적 정치적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인가? 차이가 실질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차이의 이면에 가려진 불균등한 권력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도시민의 도시 전유와 참여는 형식적으로 모든 도시민에게 열려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권력의 불균등은 이러한 무차별적 평등을 실현시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르페브르는 불균등한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의 침해를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식의 '차이의 권리'를 보충한다. 예를 들어 르페브르는 작품권, 전유권, 참여권을 보충하는 개념으로 "펼쳐진 동질화 권력에 의해 결정되어온 범주에 강제적으로 속하지 않을 권리"(Lefebvre, 1976: 35 in Dikec, 2001)를 제시한다. 또한 그는 지구화 시대의 이주, 지식의 지구화 및 의사소통의 기술적 수단의 증대와 관련하여 "차이의 권리(the right to difference) 및 정보의 권리(the right to information)"가 도

시권에 보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중심을 사용할 권리(the right to the use of the centre)”(Lefebvre, 1991; recited in Kofman and Labas, 1996: 34), 즉 노동자, 이주민, 주변인들이 계토에 분산되거나 간혀있는 것이 아니라 특권화된 장소인 중심을 이용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차이의 권리 개념들을 보충하는 것만으로는 불균등한 권력 하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도시 공간 생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없다고 본다. 이 개념들은 여전히 차이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형식적 권리를 말해주기만 할 뿐 어떤 특정한 권력관계에서 어떤 특정한 차이가 어떤 특정한 요구를 제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토비 펜스터(Tovi Fenster) 역시 르페브르가 “‘차이’ 자체보다는 다를 수 ‘있는’ 권리에(on the ‘be’ of the right to be different rather than ‘different’)”(Fenster, 2005: 219)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그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권리의 형식만을 언급하였지 구체적 차이의 관점에서 도시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펜스터에 따르면 르페브르는 차이의 권리에 대해 언급할 때에도 국민국가나 계급적 권력관계 등에만 집중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이나 성, 혹은 젠더와 관련한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펜스터는 르페브르가 ‘정체성 혹은 젠더’와 연관되어 있는 권력과 통제 개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Fenster, 2005: 219).

결국 르페브르는 도시권을 통한 사회적 실천을 통해 도시를 ‘차이의 공간’으로 생산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동질화의 권력, 중심화의 권력으로 부터 소외된 ‘차이의 권리’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지향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가부장적인 권력관계가 도시의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이 여성의 차이의 권리의 실현을 어떻게 저해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더욱이 르페브르의 관점은 여성들이 차이의 관점에서 도시에 어떤 권리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다.

#### 4. 도시에 대한 ‘차이의 권리’ 요구와 여성 정체성 사물화의 위험

따라서 필자는 이제 구체적인 여성의 차이의 관점에서 르페브르의 도시권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필자는 도시민이라는 일반 주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집단, 즉 도시 여성의 차이에서 출발하는 도시권의 주장이 가부장적 권력관계 하에서 저해되어온 여성의 차이를 실현시키고 있는지, 나아가 이러한 도시권의 주장을 통해 여성들의 차이가 교차되고 변형되는 새로운 ‘차이 공간’이 창출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르페브르의 도시권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여 마련된 서울시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이하 여행프로젝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007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여행 프로젝트는 남성과 다른 여성의 구체적 차이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여행프로젝트는 여성들을 사적인 공간에 배치하는 가부장적 도시계획 하에서 여성들이 공공 영역의 전유권과 도시정책 결정에의 참여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음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사적 영역에서 가사노동을 수행해온 여성들의 삶이 도시의 중심부나 공적인 영역에서 비가시화되어 왔던 점을 비판한다. 예를 들어 도시 교통계획은 일터로 출근하는 중성의 통근자를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 공간에서는 가사 및 육아로 인한 교통 이동이나 일/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취업주부의 이동은 고려되기 어렵다는 것이다(조영미, 2009: 53). 따라서 여행프로젝트는 남성과는 다른 여성들의 관점에서 여성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 공간에 충분히 접근하고 이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주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가 르페브르의 차이의 권리 이외에도 도시 전유권 및 참여권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고 있음은 조영미의 논문(2009)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조영미는 르페브르의 도시권을 도입하면서 도시 거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도시 공간의 ‘충분하고 완전한 사용’을 할 권리를 확보하는 공간 사용권<sup>2)</sup>과 도시 거주민이 도시 공간 생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맡는 참여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이제 도시 정책에는 그동안 배제되어왔던 여성들의 도시 사용권과 참여권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조영미, 2009: 52). 따라서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들이 도시의 공공시설을 사용하고 도시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조영미에 따르면 우선 여행 프로젝트의 사업은 “공공 공간에서의 여성의 사용권을 확대하는 도시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조영미, 2009: 52~53). 이는 여성의 도시 전유권 및 중심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을 권리와 연관된 사업들이다. 다음의 <표 1>에서 보듯이 여행프로젝트의 영역별 사업은 돌보는 서울, 일 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 만들기 등의 세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모두 여성들의 공공 영역 사용을 확대시키고 일상생활에서 도시 공간의 이용을 최대화시키고자 기획된 사업들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영역별 사업은 “공적 공간 특히 거리, 교통기관, 도심공원 사용에 대한 여성들의 안전문제, 자녀를 동반한 여성들의 공공시설 등 공적 공간의 접근성 확대, 화장실 등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사업들”(조영미, 2009: 53)로 이루어져 있다.

여성의 도시 사용권 이외에도 여행프로젝트는 도시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차이의 권리와 참여권 실현을 위하여 여행동반자와 여행프로슈머 집단을 구성하였다. 우선 여행프로젝트는 각 실국의 여행 사업 개발 및 추진과정에서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여

2) 여기서 조영미가 ‘사용권’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앞서 필자가 ‘전유권’으로 번역했던 영어단어 ‘appropriation’과 같은 것이다.

< 표 1 >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 영역별 사업개요(2008년 연동계획 기준)

영역	대표 사업
돌보는 서울	공공보육시설 확충, 자녀양육 토털서비스 제공, 공공시설 내 양육지원시설(수유실, 놀이방, 휴게실) 설치, 노인, 장애인, 노숙인 지원등
일 있는 서울	여성의 일자리 확대, 취업활성화,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생 보육 서비스제공, 탄력근무제, 육아휴직 대체인력 보강 등
넉넉한 서울	문화시설에 여성친화시설 개선(놀이방, 유모차 대여 등), 여성친화 문화프로그램 실시, 여성친화 문화시설 건립, 여성의 정보화 확대 등
안전한 서울	여성이 안전한 주거단지 설계, 안전한 지하 보차도 관리, 무장에 1등급 도시 만들기, 여성을 위한 콜택시 등
편리한 서울	공중화장실의 여성편의 증진(변기 수 확대 등), 여성을 배려한 주차장 설치, 전동차 손잡이 개선, 여성친화도시구현 도시계획 관련규정 보완 등

출처: 조영미, 2009: 53.

행동반자(2008년 기준, 5개 분과 193명)를 조직하였으며 이들은 전문적 자문, 사업평가, 모니터링을 제공하였다(조영미, 2009: 55). 뿐만 아니라 여행 프로젝트는 일반 여성들로 조직된 여행 프로슈머를 조직하였는데 2008년도에 이들은 지역 사회의 도시 공간 불편사례를 현장 조사하거나 여성의 공공시설 이용을 조사하였으며, 2009년에는 전문가와 함께 여행 화장실 및 주차장 인증평가 조사에 참여하였다(조영미, 2009: 55).

이처럼 여행프로젝트는 여성의 차이의 권리를 고려하는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며 여성의 도시 점유 및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도시를 새로운 차이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방향을 지향하였다. 이로써 여성들은 공공영역 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넓히고 도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도시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sup>3)</sup> 그러나 여기서 필자는 여행프로젝트에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3) 도시의 점유와 참여를 통해 도시에 대한 소속감이 형성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Fenster, "The Right to the Gendered City: Different Formations of Belonging in Everyday Life," *Journal of Gender Studies*, 14(3)(2010), pp.217~231을 참고하시오.

자 한다. 하나는 여행프로젝트가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여성의 차이가 무엇인가이며 다른 하나는 여행프로젝트가 르페브르가 말한 ‘작품’으로 서의 도시, 기존의 이데올로기나 추상적 공간과는 다른 ‘차이의 공간’을 생산하고 있는가이다.

우선 첫 번째의 물음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여행프로젝트가 어떤 여성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여성의 도시 사용권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보여주는 다음의 <표 2>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표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여가 및 문화 (22%)’이며, 그것의 세부적인 내용은 여성친화 문화프로그램, 여성체험/

< 표 2 > 여행 프로젝트 영역별 사업비율(2008년도 기준)

영역	세부영역	사업수(개)	비율(%)
돌봄	자녀 돌봄	13	16.7
	노인 돌봄	2	
일	직업교육	3	11.1
	취·창업/일자리/승진	7	
여가 및 문화	여가 및 문화	11	22.2
	정보화/교육	9	
건강 및 안전	건강	4	7.8
	안전	3	
인프라	교통	7	16.7
	공공시설	1	
	보도 인도	4	
	화장실	3	
주거	제도개선	4	8.9
	주거	4	
기타	다문화, 한부모, 노숙인, 장애인	6	16.6
	가이드라인 개발 및 평가	9	
계		90	100%

출처: 조영미, 2009: 61.

정보 프로그램 등과 같은 여가 및 문화, 정보화 및 교육 사업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행 프로젝트는 빈곤 계층의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거나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비율을 책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은 2008년도 기준 여행프로젝트에서 여성친화적 도시의 핵심적 주체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넉넉한 서울과 관련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만한 여가를 갖고 있는 여성들이라는 것이다. 즉 여행프로젝트는 여성친화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를 위한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즉 소위 공적인 영역에서의 일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중산층 가정주부의 요구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행프로젝트는 여전히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빈곤층 여성들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행 프로젝트는 여성의 차이 혹은 정체성을 자녀양육과 관련된 모성과 동일시하는 도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가 및 문화 다음으로 많은 지원이 배정되고 있는 ‘돌봄(16.7%)’과 ‘인프라(16.7%)’를 살펴보자. 돌보는 서울의 대표사업은 공공보육시설, 확충, 자녀 양육 도탈 서비스, 공공시설 내 양육 지원시설(수유실, 놀이방, 휴게실) 설치이며, 편리한 서울의 대표사업은 여성을 배려한 주차장 설치 및 공중화장실의 여성편의 증진(여성 변기 수 확대 및 기저귀 교환대, 유아용 의자 설치 등)을 위한 인프라 시설 제공 등에 집중되어 있다.

결국 이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여행 프로젝트가 사적인 영역에서 자녀양육을 전담하는 중산층 가정주부의 정체성을 ‘여성의 차이’를 배제하지 않는 공간 생산의 핵심으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영미 역시 이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적어도 2008년까지의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의 주요대상은 기혼의 임산부, 아이가 있는 중산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래서 주요 사업도 수유방, 유모차, 화장실, 주차장 등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 많다”(조영미, 2009: 63)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에서의 여성 차이의 권리라고 여

겨지는 것이 가부장적 권력 하에서 만들어진 기존의 여성성에 기반하여 요구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존의 가부장적 여성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여행프로젝트가 가부장제가 요구해온 여성의 정체성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시금 여성 정체성을 사물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위험성은 필자가 제기한 두 번째의 물음과도 연관되어 있다. 여행프로젝트는 르페브르가 말한 작품으로서의 공간, 기존의 이데올로기와는 다른 공간, 다양성을 배제하지 않는 ‘차이의 공간’을 생산하고 있는가? 과연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는 여성들 간의 차이를 교차시키고 나아가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차이의 공간’을 생산할 수 있는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행프로젝트는 빈곤층 여성뿐 아니라, 소위 ‘정상적’ 규범 밖에 있다고 여겨지는 싱글여성, 미혼모, 매춘여성, 레즈비언 등의 요구를 반영하는 도시 정책을 마련하는데는 소홀하였다. 이는 곧 여행프로젝트가 소위 ‘정상적’ 여성성에 기반한 차이의 권리를 고려할 뿐 여성들 간의 다양한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2010년 여행프로젝트는 여성들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사업들을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돌보는 서울 사업에는 소외된 계층의 여성 장애인, 이주여성, 청소년 미혼모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충하였으며 일 있는 서울 사업에는 노년층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추가하였다(서울시, 2010: 5~6).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여행프로젝트가 기존의 이데올로기나 동질화의 논리와는 다른 ‘차이의 공간’을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소외된 여성들은 정해진 정책의 수혜자일 뿐 정책을 만드는 데 직접적인 요구를 제기하는 주체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2010년 기준 여행프로젝트는 여성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사업을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정작 여성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여성의 도시 참여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던 여행동반자나 여행프로슈머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부연설명이 없다. 오히려 2010년의 여행프로젝트는 도시정책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역할을 정책관리나 감시하는 역할로 제한시키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예를 들어 2010년 여행 프로젝트는 여행전문가들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주부 프로슈머(서울시, 2010: 8)”나 “농수산물 원산지관리 주부 모니터링단”(서울시, 2010: 7) 등은 서울의 시설이용 편의 사업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역할로만 한정되어 있다.

만약 여성의 도시 참여권이 도시 정책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일로만 축소된다면 이를 통해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차이를 드러내거나 기존의 ‘정상적’ 여성성에 저항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즉 개방적 참여의 공간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맥락에 처해있는 다양한 여성들의 차이가 상호 교차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여행프로젝트는 결국 ‘정상적’ 범위 내에 있는 여성들만을 고려하여 특정한 여성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 다양성을 상호교차시킴으로써 새로운 차이를 만들어내는 ‘차이의 공간’이 생산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5.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차이의 권리’ 다시 생각하기

앞서 필자는 도시가 이방인들의 다양성이 상호 교차되는 개방적 차이의 공간이라는 점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데서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필자는 르페브르와 함께 도시를 차이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를 작품으로 만들 권리, 도시를 전유할 권리, 도시 계획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이외에도 동질화되지 않을 권리, 중심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을 권리, 차이의 권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러

나 르페브르의 도시이론은 구체적 차이 특히 여성의 차이에서 출발하는 도시권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여성의 차이의 권리로부터 출발하여 여성의 도시권을 재구성하고자 했던 서울시의 여행프로젝트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필자는 여행프로젝트가 가족 제도 안에서 자녀양육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산층 주부들의 정체성을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가부장적 권력 하에서 요구되는 여성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사물화시킬 위험이 있으며 나아가 여성 내부의 계급적, 문화적 차이들을 창발적으로 상호 교차시킬 수 있는 ‘차이의 공간’을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의 차이’를 다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여성들은 기존의 ‘정상적’ 여성성 혹은 가부장적 모성 등을 재현하는 도시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의 정체성과 차이를 다시 이해함으로써 ‘차이의 권리’ 주장의 내용을 창발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필자가 말하는 여성주의적 관점은 모든 여성들을 아우르는 공통성으로서의 대문자 ‘여성(Woman)’은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어떤 특정 정체성을 여성 차이의 대표 격으로 만든다고 해도 그것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나 정체성을 대변할 뿐이다. 다양한 위치에 처한 여성들은 기본적인 필요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한 도시 안에서도 다양한 여성 집단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 다른 주장들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있다. 가난하고 주변화된 여성들은 생존이슈를, 또 다른 여성들은 민주적 참여와 평등과 같은 정치적 이슈를 제기한다. 다시 말해서 여성들은 계급, 인종, 민족, 직업, 성적 성향과 같은 다양한 정체성에 뿌리를 두면서 다양한 요구들을 제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의 ‘차이의 권리’를 다시 이해한다는 것은 대문자 ‘여성(Woman)’이 아닌 ‘여

성들(women)’의 권리를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영국의 여성주의 정치사상가 샹탈 무페(Chantal Mouffe)가 분명히 언급하고 있듯이 최종적인 통일체로서의 여성 정체성 혹은 여성의 차이와 같은 것은 없다. 정책이나 정치적 이슈화를 위해 어떤 특정한 정체성이 여성의 차이로 부각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공론화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가부장적 권력이 여성에게 부여한 모성조차도 그것이 정치적 이슈가 되는 순간에는 기존의 가부장적 권력관계를 변화시킨다. 공적 영역에서 이슈화되는 순간 모성은 더 이상 수동적이지도 사적이지도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가부장적 사회가 부과한 특정한 여성 정체성에 기반하여 여성의 ‘차이의 권리’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사라 러딕(Sara Ruddick)의 말대로 여성들은 사회가 지운 여성의 의무와 이름으로 저항할 수도 있다(Ruddick, 1989: 223). 남미의 여성들은 종종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주장을 표현했으며 위켈(Gerda R. Wekerle)은 이를 “어머니의 권리(the right of mothers)”로 명명했다(Wekerle, 2010: 204).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론화의 과정에서 모성의 의미가 변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실현의 과정에서 새로운 권력관계를 만들어냄으로써 가부장적 권력 관계 안에서의 수동적 여성성으로서의 의미를 벗어나야 한다. 이때 모성은 최종적인 통일체가 아니라 의미 변형 중에 있는 과정이 된다. 모성은 더 이상 기존의 가부장적 권력관계 안에서의 모성에 한정되지 않으며 모성의 내용은 권력관계를 역전시키는 과정에서 창발적으로 변형된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의 ‘차이의 권리’를 다시 이해한다는 것은 또한 ‘여성되기’의 권리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와 같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여성들’의 정체성 혹은 ‘여성되기’의 정체성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이를 발판으로 우리는 여성의 차이에서 출발하는 도시권의 주장이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차이를 교차시키고 ‘여성되기’의 가능성을 창출하는 공간을 생산할 권리

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여성의 ‘차이의 권리’에서 출발하는 도시권의 주장은 무엇보다도 여성들 간의 차이를 교차시키고 기존의 정체성을 창발적으로 재구성할 권리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여성’이 아니라 ‘여성들’ 그리고 ‘여성되기’의 관점에서 ‘차이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여성들은 무엇보다도 우선 여성 내부의 차이와 여성되기의 창발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공론(publicity)’의 장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동질화되기 이전에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하고 경쟁하며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변형시키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공론화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도시 사용의 방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특히 가부장적 권력관계 하에서 배제되고 있는 매춘여성이나 레즈비언 여성들, 혼외의 싱글들이나 미혼모 여성들, 문화적, 경제적 권력관계 하에서 소외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나 빈곤층 여성들은 도시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도시 공간을 구획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둔 중산층 주부들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이들의 갈등은 첨예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모여 서로의 차이를 교차시킨다는 것은 서로의 차이에 귀 기울인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던 여성의 차이를 다시 생각하고 나아가 변형시킬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공론의 장을 만드는 과정이야말로 도시에 대한 여성의 ‘차이의 권리’를 여성주의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도시를 르페브르가 말했던 ‘차이의 공간’으로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공론 속에서 서로의 차이를 드러내고 차이를 교차시키는 가운데 여성들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정체성들을 만들어낼 것이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들의 ‘차이의 권리’를 주장할 때야 비로소 도시는 여성들의 예술적, 철학적 상상력을 동반하는 놀이와 축제의 장, 모험적 ‘반-공간’이 될 것이다.

## 6. 차이의 권리에서 연대의 권리로

앞의 절에서 필자는 여성들이 ‘차이의 권리’에서 출발하여 도시권을 재구성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차이를 교차시키고 ‘여성되기’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생산하는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공론의 장이 마련될 때 바로 르페브르가 말하는 ‘작품’으로서의 도시 혹은 ‘차이의 공간’이 생산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성주의적 공론의 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범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가? 여기서 필자는 여성들이 ‘차이의 권리’에서 ‘연대의 권리’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차이의 권리에서 연대의 권리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차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여성들 간의 차이가 상호교차하고 여성 정체성의 창발적 변형이 이루어지는 ‘차이의 공간’이 생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차이의 권리’만을 주장할 때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자. 차이의 권리에 대한 요구는 많은 경우 특정 정체성을 실현하거나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부장제 하에서 요구된 특정한 여성의 정체성 실현을 도시권의 핵심으로 주장하는 경우 그것은 단순히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기제가 되어 여성들 간의 차이를 억압하게 될 수 있다. 즉 이 경우 차이의 권리 요구는 특정 여성들을 대변할 뿐 권력관계에서 소외되어 있는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소외된 여성들이 자신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차이만을 주장할 때 여성들의 주장은 부딪치기만 할 뿐 상호인정도 상호교차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차이는 타자에게 들리기는 하겠지만 주의 깊게 경청될 수가 없다. 여성의 ‘차이의 권리’ 그리고 차이가 배제되지 않는 ‘차이의 공간’은 결국 여성들이 ‘여성들’ 혹은 ‘여성되기’의 태도 속에서 서로의 차이를 경청할 때 여성주의적으로 생산될 수 있으며 이것은 ‘차이의 권리’만이 아니라 ‘연대의 권리’를 함께 주장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연대의 권리는 인권이론에서 제1세대 시민적 정치적 자유의 권리, 제2세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평등의 권리와 구분하여 말하는 제3세대 국제적 연대와 결속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연대는 프랑스 혁명 당시의 구호 중 하나였던 형제애나 제1세대 여성주의자들이 내세웠던 자매애(sisterhood)와 연관된 것도 아니다. 이 모든 개념들은 연대하는 사람들의 동일성이나 동질감 혹은 공감을 전제로 하기에 제대로 차이를 드러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연대의 권리는 공론 속에서 서로의 차이를 드러내고 경청하며 교차시키는 태도, 즉 여성주의자 조디 딘(Jodi Dean)이 “이방인들의 연대(solidarity of stranger)” 혹은 “반성적 연대(reflective solidarity)”라고 말하는 것을 요구할 권리와 연관되어 있다.

조디 딘은 『낮선 자들의 연대(Solidarity of Stranger)』에서 여성들이 차이에 도 불구하고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가운데 정서적 연대, 관습적 연대, 반성적 연대를 구분한다. 그녀에 따르면 정서적 연대란 사랑과 우정과 같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성립하는 연대이며, 관습적 연대는 이익이나 가치 규범을 공유하는 공동체 관계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연대이다. 그런데 딘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종류의 연대는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연대는 해당 관계의 감정이나 해당 집단의 규범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조디 딘에 의하면 제1세대 여성주의에서 흔히 언급했던 ‘자매애’ 역시 관습적 연대의 제한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자매애 역시 백인 여성주의자들의 규범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유색인 여성주의자들의 가치와 규범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흑인 여성주의자 벨 후크스(Bell Hooks)의 말을 인용하면서 조디 딘은 ‘자매애’와 같은 관습적 연대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백인 여성 자유주의자가 모든 여성에게 자매애를 호소하는 경우 이들은 누가 여성이며 여성일 수 있는가를 미리 결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여성

간의 차이는 부정된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의 억압에 대한 여성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Jodi Dean, 1996: 15).

결과적으로 특정 정체성을 전제로 하는 자매애의 연대 안에서 유색인 여성주의자들은 자신의 욕망이나 가치관을 더 이상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 자매애는 여성들 간의 내부적 차이를 억압하는 가운데서만 성취될 수 있다. 따라서 조디 딘은 차이와 다양성을 억압하지 않는 여성 연대의 다른 방식 즉 ‘반성적 연대’를 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성의 기반을 정서적 관계나 규범적 가치가 아닌 의사소통적 공동체 위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딘이 생각하는 반성적 연대는 서로의 차이에 대해 묻고 반응하고 논쟁하는 등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다소 소란스러운 의사소통의 과정을 함께 하려는 태도 속에서 구축된다. 여기서 반성적 연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타자에게 동의하는 태도가 아니라 타자의 ‘다름’을 묻고 관심을 가지는 태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디 딘은 동의가 아니라 “‘질문(query)’이 ‘우리’를 구성한다”(Dean, 1996: 16)고 말한다. 즉 타자의 차이는 반성적 연대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요소가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우리가 토론과 질문을 통해 만드는 결합은 인정과 책임이라는 공동의 기대를 야기한다. 이 점에서 반성적 연대는 차이를 창출하는 다원적 상호 결합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연대 호소의 의미로 파악한다”(Dean, 1996: 16).

이처럼 반성적 연대 안에서는 동일성보다 차이가 부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대 안에서 여성들의 담론적 실천은 소란스럽다. 이들은 기꺼이 “난상토론을 한다(get messy)”(Dean, 1996: 319). 이들은 침묵하지 않고 충돌하고, 불일치를 드러내며 급기야는 감정을 드러내기까지 한다. 그러나 리넷 우탈은 이러한 소란스러운 의사소통이 바로 여성들의 친밀감을 구

성한다는 점을 통찰한다.

“차이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공통된 노력은 ‘타자’로 인지되는 여성들을 우리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Dean, 1996: 319).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을 통해 구성원들이 서로의 차이에 대해 잘 알게 된다는 것이다. 반성적 의사소통 속에서 여성들은 상대가 어떤 부분에서 다르고 또 어떤 부분을 불쾌하게 여기는지를 잘 알게 되며 이를 통해 오히려 친밀감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친밀감을 토대로 여성들은 자신의 인지적 규범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

이로부터 필자는 여성들이 도시를 ‘여성들’의 공간, ‘여성되기’의 공간 즉 차이를 배제하지 않는 ‘차이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단순히 ‘차이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반성적 연대의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여성의 차이를 창조적으로 실현하는 도시권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여성들은 자신의 차이가 경청될 수 있도록 연대의 권리를 요구해야 하며, 연대의 과정 속에서 기존의 가부장적 여성 정체성을 여타의 여성 내부의 차이들과 교차시킴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갖는 차이로 변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차이를 실현하는 도시공간은 기존의 여성성에 기반하여 차이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생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차이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차이를 상호 교차시키고 변형시키는 반성적 연대의 공간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여성들은 연대의 권리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

## 7. 나가는 말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시에서의 여성의 ‘차이의 권리’를 여성주의적으



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여성’의 차이를 ‘여성들’의 차이로 여성 정체성을 ‘여성되기’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에서의 여성의 ‘차이의 권리’ 주장을 위한 사회적 실천은 여성들 간의 차이를 교차시키고 기존의 가부장적 여성 정체성의 의미를 변형시키는 공론화의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이럴 때 비로소 여성의 차이의 권리 주장은 타자와 다양성을 배제하지 않는 ‘차이의 공간’,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체험의 공간을 생산해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차이의 공간’을 생산해 내는 이러한 공론화의 과정은 연대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과정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차이를 드러내면서도 교차시키는 반성적 연대의 권리에 호소할 때 여성들은 비로소 여성 내부의 타자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으며, 타자를 배제하지 않는 ‘차이의 권리’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Abstract

A Feminist Reconstruct of the Concept of ‘the Right to the City’:  
From the right to difference to the right to solidarity

Lee, Hyun-Jae

In this paper, I examine “the Women Friendly Seoul Project” that tries to reconstruct ‘the right to the city’ of Henri Lefebvre from a feminist standpoint. And then I criticize that this project can’t product ‘the differential space’ that is beyond the paternalistic ideology, because it assumes only the maternity to be a normal identity of the Woman. So I argue that we have to consider the internal difference and the emergent possibility of the particular identity of women, in order to assert the right to the difference of the woman. Finally I insist that women need to assert not only the right to difference, but also the right to solidarity, in order to make the city ‘the differential space’.

Keywords: the right to the city, the right to difference, becoming women, the right to solidarity, the differential space

## 참고자료

- 강현수. 2009.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통권 32호, 42~90쪽.
- 맥도웰, 린다. 2010.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한울.
- 멈포드, 루이스. 김영기 역. 1990. 『역사 속의 도시: 그 기원, 변형과 전망』. 명보문화사.
- 박병도. 2006. 「연대의 권리, 제3세대 인권」.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저. 『인권법』. 아카넷.
- 서울특별시. 2010. 「2010년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http://women.seoul.go.kr/v2008/wmateral/welfare\\_01\\_02\\_03\\_01\\_01.html](http://women.seoul.go.kr/v2008/wmateral/welfare_01_02_03_01_01.html).
- 스미스, 마이클 피터. 남영호 외 옮김. 2010. 『초국적 도시이론: 지구화의 새로운 이해』. 한울.
- 이봉화·조영미. 2007. 「여성의 도시권을 통해 본 도시 여성 정책 전망—서울시 ‘여성 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제23차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흔들리는 가부장제, 새로운 젠더 질서를 향하여』, 208~221쪽.
- 이현재. 2005. 「여성주의적 연대의 가능성—조디 던의 ‘반성적 연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회. 《한국여성철학》, 제5권.
- \_\_\_\_\_. 2009. 「여성의 이주, 다층적 스케일의 장소열기 그리고 정체성 저글링」. 한국 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제22호, 7~36쪽.
- 장세룡. 2006. 「앙리 르페브르와 공간의 생산—역사이론적 ‘전유’의 모색」.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 경계》, 58, 293~324쪽.
- 조영미. 2009. 「여성 친화 도시 만들기 정책의 실제와 과제: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 여성학회 제25차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발전의 시대, 공간의 젠더정치』, 51~69쪽.
- 하비, 데이비드. 구동희/박영민 옮김. 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 \_\_\_\_\_. 초의수 옮김. 1996. 『도시의 정치경제학』. 한울.
- \_\_\_\_\_. 최병두 외 옮김. 2001. 『희망의 공간』. 한울.
- Dean, Jodi. 1996. *Solidarity of strangers: Feminism after identity politic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ikec, M. 2001. “Justice and the spatial imagin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33, pp.1785~1805.
- Fenster, Tovi. 2005. “The Right to the Gendered City: Different formations of belonging in everyday life.” in *Journal of Gender Studies*, Vol.12, No.3, pp.217~231.
- Fincher, Ruth and Jacobs, Jane M.(eds.). 1998. *Cities of Difference*. New York/London: The

- Guilford Press.
- Kofman, Eleonore and Labas, Elisabeth. 1996. "Lost in Transposition-Time, Space and the City." in Lefebvre, Henri. *Writings on Cities* (translated and edited by Eleonore Kofman and Elizabeth Lebas. MA/Oxford/Victoria: Blackwell.
- Lefebvre, Henri.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translated by Donald Niholson~Smith). Oxford: Blackwell.
- \_\_\_\_\_. 1996. *Writings on Cities* (translated and edited by Eleonore Kofman and Elizabeth Lebas. MA/Oxford/Victoria: Blackwell.
- Mouffe, Chantal. 1992. "Democratic Citizenship and the Political Community" in Chantal Mouffe(ed.). *Dimensions of Radical Democracy*. London: Verso.
- Percell, M. 2002. "Excavating Lefebvre: The right to the city and its urban politics of the inhabitant." in *GeoJournal*, 58, pp.99~108.
- Ruddick, S. 1989. *Maternal Thinking: Toward a Politics of Peace*. Boston: Bacon.
- Uttal, Lynet. 1990. "Nods That Silence" in Gloria Anzaldúa(eds.). *Making Face, Making Soul: Haciendo Caras-Creative and Critical Perspectives by Feminists of Color*. San Francisco.
- Wekerle, Gerda R. 2000. "Women's right to the city: Gendered spaces of pluralistic citizenship." in Isin, Engin F.(eds.). *Democracy, Citizenship and the Global City*, London: Routledge, pp.203~217.

논문접수일: 2010. 10. 4

논문수정일: 2010. 10. 25

게재확정일: 2010. 10. 27